

국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안전운항 확보

국회는 3월2일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선박안전법이 개정된 것은 선박 운항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박에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해상에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또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건 등을 정하고 행정조사 실시 전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게 했다.(제4조의3제1항).

이와함께 선박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 기능을 가진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인정(제4조의3제2항)하고, 선장은 해적 또는 무장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위치 정보 노출로 안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의3제3항).

그리고 우수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제12조제3항).

이밖에도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박 소유자등에게 통보(제12조제5항)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위치보고의무에 위반하여 선박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제24조의3).

여수·광양항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 금지 4월5일부터 입항시 하역불허 및 주방 조치

일정중량 이상의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single-hull) 유조선'의 여수항과 광양항 입항이 금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해양환경보호 및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원유 또는 벙커유 등 중급유 5천(재화중량)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를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 밝혔다.

다른 유류보다 오염피해가 큰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돼 있지 않아 선박 충돌 또는 좌초시 선체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체구조를 갖고 있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대형 오염사고를 일으킨 '프레스티지호' 사건을 계기로 단일선체 유조선을 조기 퇴출시키기 위해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을 개정했다"면서 입항을 거부하고 그래도 입항을 고집하면 하역 불허, 추방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